

부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9773 판결 [약정금및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은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34869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837,767원 및 그중 84,758,7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4,078,9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88,837,767원은 84,758,781원의 오기이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119,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40,000,000원에서 대출수수료 25,000,000원, 3개월분 선이자 15,875,36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5,768,000원, 차용증서공증비용 875,400원 합계 47,518,760원을 공제하고 24,124,640원을 이유 없이 미지급하여 합계 71,643,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용금은 68,356,600원(=

140,000,000원 - 71,643,40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1. 29.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16,405,593원이므로 원리금 합계는 84,762,193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73,600,000원을 배당받아 88,837,807원(=

173,600,000원 - 84,762,193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원고는 그중 88,837,767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 을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8,356,600원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로 45,000,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 근저당권설정비용 5,768,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차용금은 일단 위 합계 119,124,600원이 된다.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J였고 J는 연대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므로 J에게 자기앞수표가 교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차용금증서에 수기로 기재된 공증비용 채무자부담 약정이 차용금증서 제6항의 일체비용 채무자부담 약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금 119,124,6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장대로 2018. 11. 30.부터 2019. 11. 29.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8,589,904원이 되고, 원리금 합계는 147,714,504원이 된다.

피고가 배당받은 173,600,000원에서 위 원리금 147,714,504원을 빼면 25,885,496원이 되는데, 피고가 위 25,885,496원 전부를 과다하게 배당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2,096,828원(= 채권금액 150,000,000원 - 배당액 117,903,172원)을 배당받지 못한 G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중, 판사 위은숙, 판사 신승아